

#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1,287,400	22,538,622
일반회계	724,353,181	21,730,595
특별회계	26,934,219	808,027
공기업특별회계	13,407,501	402,22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3,407,501	402,225
기타특별회계	13,526,718	405,80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0,100	1,20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89,500	2,68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3,885	29,217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7,920	5,63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572,834	107,185
수질개선 특별회계	6,659,591	199,788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02,888	60,08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24,95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